

#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(의안번호 제523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8. 12. 24.

총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1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성군수  
나. 회부일자 : 1998. 12. 12  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12. 2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개정사유

○ '98.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공통' 건의사항에 의거 물품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○ 불용품의 소요조회에 있어 모든 물품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하한가격의 지정 (안 제16조제3항제2호)  
·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10백만원 미만에서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함.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행정자치부(경상남도)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·도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단위당 단가 하한가격의 지정 내용으로 행정자치부(경상남도) 지침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8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